

(비공식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
제 Por.1/2559 호

촉진 프로젝트에서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사용 허가

-----

촉진 프로젝트 현장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,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관리하기 위해 불기 2520 년(1977 년) 투자촉진법 제 11 조 및 제 18 조에 의거하여 2016 년 2 월 29 일 투자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투자청은 다음과 같이 고시하는 바이다.

1. 촉진 프로젝트에서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 사용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2. 촉진 업체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촉진 프로젝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한다.
3. 2019 년 1 월 1 일부터는 노동부가 규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노동 고용에 관한 정부 간 양해각서(MOU) 상의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만을 허가한다.
4. 국경 지역 10 개 짱왓(道에 해당하는 태국의 행정구역)에 마련된 특별경제자유구역 및 남부 국경 지역의 투자촉진 방안과 부합하는 곳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불기 2522 년(1979 년) 입국관리법에 따라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.

고시일 2017 년 4 월 29 일

(히란야 수찌나이)

태국투자위원회 의장